

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

구분	근거법령	위 반 행 위	과태료금액
1	법 제27조 제1항제1호	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	100만원
2	법 제27조 제1항제2호	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	100만원
3	법 제27조 제1항제3호	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	50만원
4	법 제27조 제1항제4호	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	100만원
5	법 제27조 제1항제5호	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(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)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50만원
6	법 제27조 제1항제6호	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100만원

※ 비 고

제3호에서 "정당한 사유"라 함은 천재·지변·질병·입대·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.